

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공고

「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」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“가정산소치료서비스”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의 등록을 공고 하오니, 서비스제공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06. 10. 26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구 분	내 용
등록자격	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-77호(2006.10.18) 제2조 제4항의 【별표1】 가정산소 치료서비스기준에 적합한 자(의료기기 수입·제조·판매·임대업소)
근거법규	○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, 시행규칙 제15조,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-77호
등록절차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등록 공고</div> ▶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등록 접수</div> ▶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서류 심사</div> ▶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등록증 발급</div> ▷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전·사후</div> ▷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현장 실사</div> </div>
신청기간	○ 2006. 10. 26(목) ~ 2006. 12.29(금)
접수방법	○ 우편(마감일 소인 유효), 직접 제출
신청· 접수처	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-9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추진단 급여개발팀 (☎02-3270-9384, 385) 우편번호 : 121-749 ○ 신청기간 이후 등록 : 제공업소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본부
기타	○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 /알림마당/새소식란) 참조

<뒷면 계속>

구 분	내 용	
구비서류	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○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 1부 ○ 건물·토지 등기부등본(해당업소에 한함) 사본 1부 ○ 임대차계약서(해당업소에 한함) 사본 1부 ○ 의료기기 제조(수입)품목 허가증 사본 1부 ○ 의료기기 판매(임대)업 신고증 사본 1부 ○ 의료기기 공급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(판매·임대업소 또는 일부 장비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 받는 제조·수입업소에 한함) 사본 1부 ○ 가정산소치료 장비 및 서비스별 가격 현황 사본 1부(공단서식) ○ 의료용 산소발생기 세부목록 1부(공단서식) ○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법인등기부 등본,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) ○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
	제조 (수입) 업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기기 제조(수입)업 허가증 사본 1부 ○ 의료기기 시험검사성적서(의료기기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포함)사본 1부 ○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사본 1부
	<p>※판매(임대)만 하는 업소는 공통사항의 구비서류</p>	

끝.